

「퇴직연금 정기예금」핵심설명서



1 기본정보

최고금리 (세금납부 전)	연 3.50% (DB 연 3.50% (DC 연 3.60% (디를	(/IRP) ▶디폴트옵션: 3년제, '23.02.01 기준, 세전	
상품유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금융기관)		
계약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이상 5년 미만에서 지정 •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지정		
가입금액	1원 이상		
분할해지	0	• 만기해지 포함 3회 • 분할지급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단,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는 23년 7월11일까 지 재예치 가능)	
	DB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	
예금담보대출		불가 (퇴직연금제도 내 운용되는 상품)	
예금자보호	DC/IRP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DB 예금보험공사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또는 이자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지급제한 등록 불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지급관련 제한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특별중도해지시 이자율 · (예) 계약기간 1년 이하 : 기간별 약정금리





「퇴직연금 정기예금」핵심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자세한 내용은 약관,</u> 수령하시는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 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금융기관)	
상품유형	• 퇴직연금 정기예금	
거래방법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등 (퇴직연금 운용상품 지정 필요)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가입금액	• 1원 이상	
계약기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이상 5년 미만에서 지정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지정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지급제한 등록 불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구 분			내 용		www.wooriba
	▷ 기본이자율은 신규기입	일에 영업점 5	및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기본이자율	계약기간		DB	DC/IRP	디폴트옵션
	3개월 이상 ~ 6개	월 미만	3.25	3.25	-
	6개월 이상 ~ 9개	월 미만	3.40	3.40	-
	9개월 이상 ~ 12개	월 미만	3.47	3.47	-
(세금납부 전, 연이율, %,	12개월 이상 ~ 18개	월 미만	3.55	3.55	-
2023.02.01.	18개월 이상 ~ 24개	월 미만	3.50	3.50	<u>-</u>
기준)	24개월 이상 ~ 30개		3.50	3.50	
/	30개월 이상 ~ 36개		3.50	3.50	
	36개월 이상 ~ 60개		3.50	3.50	3.60
	60개월 이상		3.50	3.50	
	※ 신규(재예치되었을 경・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경과기간			적용이율	
만기후이자 율	만기후 1개월	이내	만	기시점 약정이율	€ X 50 %
	만기후 1개월 초과 ~			기시점 약정이율	
	만기후 6개월	초과	만	기시점 약정이율	€ X 20 %
만기이자	• 계약기간 만료로 재여	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경	적용
산출근거	[이자계산 산식] 예금가				
	 ▷ 신규일 및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만기앞당김 지급" 적용되지 않음) ●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 				
	보유기간 이율				
일반중도해지	3개월 미만	연 0.1%		비고	
이자율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기본이자율 × 50% × 경과일수/계약일수				비고
	3개월이상 ~ 6개월비반	기본이자율		과일수/계약일수	비고 -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 50% × 경고	과일수/계약일수 과일수/계약일수	-
		기본이자율	× 50% × 경 × 70% × 경		비고 - 최저이자율 연 0.15%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기본이자율 기본이자율	× 50% × 경3 × 70% × 경3 × 80% × 경3	과일수/계약일수	최저이자율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9개월이상 ~ 11개월미만 11개월이상	기본이자율 기본이자율 기본이자율	× 50% × 경3 × 70% × 경3 × 80% × 경3 × 90% × 경3	마일수/계약일수 마일수/계약일수 마일수/계약일수	최저이자율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9개월이상 ~ 11개월미만	기본이자율 기본이자율 기본이자율	× 50% × 경3 × 70% × 경3 × 80% × 경3 × 90% × 경3	마일수/계약일수 마일수/계약일수 마일수/계약일수	최저이자율

(0	<i>(</i>) 우리은행	
4	//	
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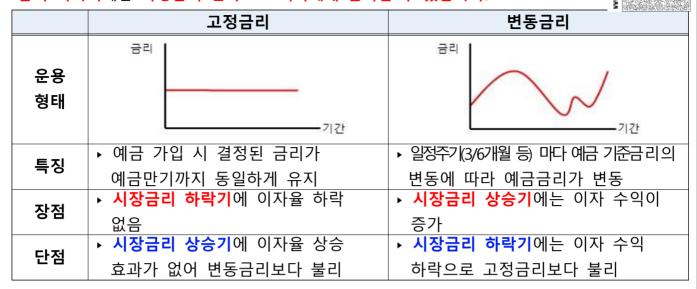
구 분	내 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5. 수탁자의 사임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9. 수수료의 징수10.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사신시성운용병업의 연성·증인 뒤조 등의 사유도 인안 성품 교세의 성부 ▷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한다.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계약기간 1년 이하 : 기간별 약정금리 계약기간 2년 :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계약기간 3년 :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예차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계약기간 5년 :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3년 이상 예치시 3년제 일반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계약기간 2년 미만 : 기간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단, 6개월 미만은 3개월,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6개월, 9개월 이상 1년 미만은 9개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계약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3.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한다. 	
예금자보호 여부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용	
세제혜택	불가능	
만기처리방법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별도 지시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재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사업자가 신규시 지정한 상품으로하고, 신규시 지정한 상품이 없을 경우 원 계약일수 만큼 동일상품으로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기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기원 	예치 재예치 재예치 비오의 해지한
분할 지급 (일부 지급)	•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하다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퇴직연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4.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인출의 경우	덕용 아니함.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능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여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으로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어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포함)을 에 관한 의 제정 는 경우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기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 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 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내에 수 합니다.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기업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 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압류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기 급 ㅠ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질권설정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출연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74 71 71 71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